

보도	필요	필요
법	자료채널	확진(의견)
과	점	국

기안용지

(전화: 731.63+3)

분류기호 문서번호	농축 27461-10	시행상 특별취급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5.1.	시	항
수신처 보존기간	3		
시행일자	88. 1. 15.		
보조 기관	농축과장 가축위생계장	협조 기관	법무담당관참사필
기안책임자	이주학		문서통제 1988. 1. 15
경유 수신 참조	각안참조	발신 일의	1988. 1. 15 서울특별시 1988. 1. 15
제목	'88 가축 검진 사업 실시		
제 1 안	제 3 / 통		
수신	내부결재		
제목	같은건		
<p>'88년도 우리시 가축 방역 사업의 일환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관내에 기르는 적소에 대한 검진 사업을 실시하고자 동행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안과 같이 고시하고 각안 시행하고자 합니다. 끝</p>			

제 2 안 고 시 (안)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 24안 1988. 11. 16

가축 검진 사업 실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내에 기존 ^{고양이} 집소에 대한 검진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 합니다.

1988

서울특별시장

1. 목적 ; 가축전염병의 만연을 방지하고 축산업 발전 및 인수 공동 전염병 근절에 기여함

2. 지역 ; 서울특별시

3. 내용 ; 집소의 결핵병 및 부루세라병 검진

4. 실시기간 ; 88. 3. 1 ~ 10. 31.

5. 실시방법 ;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소 가축방역과 과 공수의에게 위촉 실시

6. 실시대상 ;

• 결핵병 : 집소 1세이상 전두수

• 부류세라빙 ; 착유 하는 장소

7. 기타사항 ; 검진 결과 양성 및 위양성 장소가 발생 되었을 때는 농림수산부 예각 제 132호 에 의거 조치

제 3 안

수 신 보건환경연구소장

참 조 축산물검사부장

제 목 같 은 건

'88년도 ^{우리시}가축 방역 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실행계획}비행천

고시문과 같이 검진 사업을 실시키로 하였으니 본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

첨부. 고시문 1부 끝.

제 4 안

수 신 농림수산부장관

참 조 가축위생과장

제 목 같 은 건

88년도 우리시 가축 방역 사업 계획의 일환
으로 별첨 내용과 같이 가축 검진 사업 실시를 고시
하였기 보고 합니다.

첨부 : 고시문 1부 끝.

제 5 안

수신 수신처참진

참진 산업과장

제목 같은전

88년도 우리시 가축 방역 사업 계획의 일환
으로 별첨 내용과 같이 가축 검진 사업 실시를 고시
하였으나 귀 관내 젖소 사육 홀주에게 검진을 받도록
계도 하여 보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하기 바랍.

첨부 : 고시문 1부 끝.

수신처 서각 1 ~ 2

제 6 안

수신 서울특별시 수의사회 회장

제목 같은건

'88년도 우리시 가족 방역사업 계획의 일환
으로 별첨 내용과 같이 가족 검진사업 실시를 고시
하였거 알려 드립니다.

첨부: 고시문 1부 끝

제7안

수신 공보관 . 21

발신 산업경제국장

제목 같은건

'88년도 우리시 가족 방역사업 계획의 일환
으로 가족 검진 사업을 실시 하기 위하여 별첨 내용을
고시 하고자 하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을 홍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고시문 3부 끝

가축전염병예방법 발췌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검사, 주사, 약육 또는 무약의 실시)

- (1) 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축의 소유자에게 가축에 대하여 검사, 주사, 약육 또는 무약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관비 수의사를 두게 할 수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3조(검사, 주사, 약육 또는 무약의 실시명령등)

- (1)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에 대한 검사, 주사, 약육 또는 무약의 명령을 하거나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축, 종계 및 시실에 대한 정기검사의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사, 주사, 약육, 무약 또는 정기검사의 실시일 10일전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목 적
2. 지 역
3. 대상 가축명과 질병의 종류
4. 실시기간
5. 기타 필요한 사항